

의안
번호

285호

2023 회계연도세입·세출결산 승인(안)
검토보고서

은 영 위 원 회

2023 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승인(안) 검토보고 (의회사무국)

2024. 6. 3.
전문위원 한 상규

1. 제출경위

- 가. 제출자: 성북구청장 (의안번호: 285)
- 나. 제출일자: 2024. 5. 23.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: 2024. 5. 25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 : 별첨 (결산서 참조)

4. 2023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(안) 검토내용

▣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 ①	실제수납액 ②	미수납액 ③=①-②	징수율 (%)
계	55,000	55,145	55,145	-	100%

■ **세출결산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현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 (불용액)	잔액비율 (%)
계	4,432,370	3,769,546	-	662,824	15%
지방의회 운영지원	2,420,129	2,243,861	-	176,268	7.3%
행정운영 경비	2,012,241	1,525,685	-	486,556	24.2%

■ 예산전용 : 없음

■ 예산이체 : 없음

■ 예산이월 : 없음

■ 예비비 : 없음

■ **집행잔액 사유별 현황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집행사유 미 발생	예산절감	예산집행 잔액
의회사무국	662,824	-	-	662,824

■ **단위사업별 세부내역**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별 (단위사업)	예산현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	잔액비율 (%)
계	4,432,370	3,769,546	-	662,824	15%
지방의회 운영지원	2,420,129	2,243,861	-	176,268	7.3%
의회운영 내실화	2,270,989	2,144,600		126,389	5.5
국내외 의정 교류	85,300	44,354		40,946	48.0
의정활동 홍보	63,840	54,907		8,933	1.4

행정운영 경비	2,012,241	1,525,685	-	486,556	24.1%
인력운영비	1,787,332	1,388,558		398,774	22.2
기본경비	224,909	137,127		87,782	39.0

■ 검토의견

-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,
- 세입 예산현액은 5천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천5백1십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0% 수납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5천5백1십4만원 인.
- 세출 예산현액은 44억3,237만원으로 전년도 37억6,354만원 보다 6억 6,88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,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85%인 37억 6,955만원을 지출하였고, 다음연도 이 월액은 없으며,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%인 6억6,284만원이며, 이는 전년도 집행 잔액을 16.2%보다 1.2% 감소 하였음
- 집행잔액을 살펴보면,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24억 2,013만원으로 이 중에 22억 4,386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의 7.3%인 1억 7,6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, 세부적으로는 의회운영내실화에서 1억2,639만원, 국내외 의정교류에서 4,096만원, 의정활동 홍보에서 8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.
-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억 1,224만원으로 이 중에 15억 2,568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액의 24.2%인 4억 8,6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, 세부적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3억 9,877만원, 기본경비에서 8,7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.
-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, 지방의회 운영지원 지원 잔액 (1억 7,627만원은 의원국내여비에서 타지역 방문 행사 미추진함에 따른 잔액 발생,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유관기관 체육대회 미개최 및 교육관련 공통경비 미집행, 의원상해부담금은 보상금 미신청 잔액,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월된 의전차량 예산 집행 후 잔액, 의회활동 홍보 예산은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각종 인쇄비 도서구입비등 사무관

리비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

○ 공공운영비는 의전차량 교체로 차량유지비 (유류비, 수리비 등) 절감과, 사회무요원보 상금중 복무 중 연·병가 및 교육 등에 따른 근무일수의 변동 및 포상금은 표창대상 직원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

○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지원 집행잔액 4억8,656만원의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 월 평균 근무 일수 및 휴가 사용 및 초과근무 자제로 인한 집행 잔액과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 등이 감소하고, 기본경비는 시간외 근무에 미집행과 이에 따른 급량비 잔액이 발생이 발생하였으며, 기타 행정전산용품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절약과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함

○ 예산집행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, 집행잔액 비율이 15%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

○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승인(안)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감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(결산) 등의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.

※ 관계법령

1) 지방자치법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